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49 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이연희

한준호 · 홍기원 · 박희승

조 국 • 민병덕 • 채현일

김한규 • 이기헌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·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,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 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 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,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, 국민의 권익 보호 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전단 중 "제6항에"를 "제7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전단 중 "처리하여야"를 "성실하게 처리하여야"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 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, 즉시 신고자 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2항 중 "제4항에"를 "제5항에"로 한다.

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제59조제6항에"를 각각 "제59조제7항에"로 한다.

제61조의2 중 "제59조제6항에"를 "제59조제7항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유서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	제59조(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
	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
	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
	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
	고,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
	통지하여야 한다.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<u>⑦</u> 관할 수사기관은 <u>제6항에</u>	<u>⑧</u> <u>제7항에</u>
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	
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위	<u>.</u>
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	
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	
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	
같다.	
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	<u>⑨</u>
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	
<u>처리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제1	<u>성실하게 처리하여야</u>
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	
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	
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	

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### ⑨ (생략)

제60조(조사결과의 처리) ① (생략)

② 제59조제3항 또는 <u>제4항에</u>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반은 조사기관(조사기관이 이첩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·재이첩, 감사 요구, 송치, 수사의뢰 또는 고 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은 감사·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·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③ ~ ⑥ (생 략)

제61조(재정신청) ① 위원회는 <u>제</u>
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, 그 고발한

 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제60조(조사결과의 처리) ① (현
행과 같음)
②제5항에-
<u>.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1조(재정신청) ① <u>제</u>
<u>59조제7항에</u>

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 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 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 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 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1. (생략)
- 2. 위원회가 <u>제59조제6항에</u>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 개월이 경과한 날

제61조의2(이의신청) <u>제59조제6항</u> 제 <u>에</u>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 관에 고발한 경우, 위원회가 사 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

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(현행과 같음)
2 <u>제59조제7항에</u>
61조의2(이의신청) <u>제59조제7항</u>
<u>oll</u>

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 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7 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 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.

•